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06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발 의 자 : 오경환, 맹진영,  
김용석(도봉), 최호정,  
김현아, 박양숙, 신건택,  
김진철, 권미경, 이숙자 의원  
(10명)

##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 조사 항목 추가 및 평가 규정 반영 개정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폐지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평가 규정 반영 개정(안 제14조)
-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5호를 신설한다.

제5호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  
사용 실태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 업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4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1. ~ 4.(생략) 〈신설〉</p> <p>5.(생략)</p>	<p>제14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b>및 평가</b>) ① 시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 ----- ----- ----- ----- 주기적으로 조사·<b>평가</b>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b>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b> <b>6. (현행 제5호와 같음)</b></p> <p>②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 업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과태료)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21조 <u>〈삭제〉</u></p>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조식의 신설 또는 예산의 소요가 없음

4. 작성자

오경환 의원